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훈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885

발의연월일: 2020. 9. 15.

발 의 자: 강훈식 · 신동근 · 기동민

김윤덕 • 유동수 • 맹성규

송갑석 · 김주영 · 이용빈

정춘숙 · 김종민 · 남인순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하여 귀농어 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있음.

그런데 2019년 귀농·귀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, 귀농 가구는 영농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으로 자금 및 기술 부족과 함께 '재배 품목의 판로 부족'을 주요하게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(19.1%, 1·2순위 복수응답).

이에 귀농어·귀촌종합지원센터의 수행 사업으로 귀농어업인이 재배·사육·양식하는 품목의 판로에 대한 상담·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(안 제10조제4항제2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귀농어업인이 재배·사육·양식하는 품목의 판로 등에 대한 상담·지원 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귀농어·귀촌종합지원센터	제10조(귀농어·귀촌종합지원센터
지정 등) ① ~ ③ (생 략)	지정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
	음)
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	4
사업을 수행한다.	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2의2. 귀농어업인이 재배·사육·
	양식하는 품목의 판로 등에
	대한 상담·지원 사업
3. • 4. (생 략)	3. • 4. (현행과 같음)
⑤・⑥ (생 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